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5. 23.(수)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님들 확인이 종료된 이후에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 및 이용자보호국의 안전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9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2018-24-226)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19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현숙 재정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재정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1조와 제6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지출한도를 4월 31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5월 21일에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1조 1,925억원으로 일반회계 323억원, 기금 1조 1,60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수입은 과기정통부 소관 수입을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세출은 2,312억원, 일반회계 566억원, 기금 1,746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조 1,925억원으로 ‘18년도 계획 대비 3,5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3억원으로 ‘18년도 계획 대비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1,602억원으로 ‘18년도 계획 대비 3,57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방송사 법정분담금 징수액은 1,974억원으로 IPTV사업자의 매출증가 등을 통해 ‘18년도 대비 15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파수 할당 대가 징수액은 7,433억원으로 5G 주파수 신규할당에 따라 ‘18년도 대비 3,89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외 정부내부 수입 및 여유자금 회수 등 기타수입은 2,195억원으로 ‘18년도 대비 478억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세출은 2,312억원으로 ‘18년도 2,376억원 대비 6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6억원으로 ‘18년 555억원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198억원, 기본경비 40억원, 15개 계속사업이 3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1,746억원으로 ‘18년 1,822억원 대비 7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사업 27개 1,710억원, 신규사업 4개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국정과제와 제4기 방통위 주요정책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 사회적 가치 제고,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 개인 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46개 세부사업 중 신규가 4개, 증액 18개, 감액 6개, 전년동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 방송통신 규제분석 및 규제설계 지원, 전기통신역무 합리적 규제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예산은 각각 5억, 24.1억원, 2억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재난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18개 사업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증액 규모 순으로 정리한 <표>를 보시면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사업이 35.9억원 증액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이 33.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이 11억원,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이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7.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5.3억원,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이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사업 및 외부기관 지적사업 등 6개 사업을 대상으로 24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표>에서 보시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8.8억원 감액, EBS 방송인프라 개선 3.3억원 감액,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이 233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리랑 국제방송은 국회 지적으로 인해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지출한도에 따른 세출사업과는 별도로 기재부에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시스템 개발로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9월에 최종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붙임>으로 2019년도 예산안 수입·지출 총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 위원님, 남북방송통신 교류와 관련해서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북미정상회담까지 잘 풀리고 후속 조치들이 원만하게 다 된다면 남북방송통신 분야에는 협력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이 지난 대략 9년간 이것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참여정부 시절에 계속해 오던 사업조차도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복원시킬 수 있겠고, 또 남북 간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돈이 되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보고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으로 나타난 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10% 삭감하는 등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또한 4차 산업혁명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촉박한 기금심의 일정 중에도 위원회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애쓴 재정팀 수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질문으로 내년에 국민이 직접사업을 제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국민 참여예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청각장애인용 자막과 수어 시스템 개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사업입니까?

○ 최현숙 재정팀장

- 신규사업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 최현숙 재정팀장

- 지난주에 일반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부처의 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국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세출사업과는 별도로 기재부가 관리를 하지만 이것도 동시에 9월 초에 기재부가 정부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 투표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선정될지는 그때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투표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최현숙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매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 부분 감액이 됐는데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편성예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방발기금으로 다시 편성하고, 우리 위원회는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예산을 지원했다고 그것을 해명하는 악순환이 중단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부터 미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 최현숙 재정팀장

- 올해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만 13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8년도 확정 예산 369억원 대비 233억원 63%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전체적으로 감액사업이 249억원인데 이 가운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감액이 233억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재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편된다면 우리 예산 전체가 다시 흐트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 **최현숙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이 부분 미리 유의해서 편성 과정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관 기획조정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 위원님들 모두 예산 증액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보태고 싶은 것이 지역방송·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약 7.7억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최현숙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예산도 전액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 **최현숙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려운 지역·중소방송들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방발기금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액수가 적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사들도 또 중소방송사들도 방발기금을 내고 있는데 그 방발기금이 자기들이 내는 돈이니까 자기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민원들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증액을 해도 또

기재부에 올라가서는 깎이고, 그리고는 국회에 들어가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예산 증액 활동을 통해서 또 다시 부활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재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해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해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필요성, 무엇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진흥에 관한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또는 방송진흥사업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근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산팀들이 수고가 많았고, 기재부와 밀고 당기기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제가 성원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최현숙 재정팀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장님, 팀장님 예산 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국회로 가야지요. 더 힘든 국회 예산 협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남북정상 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맞춰서 남북방송교류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표철수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끝까지 지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방송교류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이 남북방송통신교류 관련 예산이지요?

○ **최현숙 재정팀장**

- 방송공동제작 국제협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공동제작 협력 방안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 **최현숙 재정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미디어서밋(AMS)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가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 강화', 특히 방송의 국제협력 강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방송콘텐츠의 교류협력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사회에서 절대 빈곤의 해결이나 계층 간 불평등 해소 문제,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등 각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 간 이런 것들을 아젠다화 하고, 또 공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송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당국에도 제대로 설명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분야 국제교류의 주무부처가 어디냐? 제가 이번에 만난 분들은 다들 지상파방송사들, 공영방송사들을 규제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산업 관련 진흥부처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방송분야의 국제교류 협력의 주무부처는 바로 이러한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공적책무를 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상파방송에 대해서 규제 권한, 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가겠지만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제일 밑에 나와 있지만 특히 EU GDPR 등 국제협력 강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GDPR이 이번 주에 시행될 것입니다. 이번에 느꼈던 것이 EU GDPR과 관련된 부분의 홍보, 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때 정작 방통위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들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 **김영관 기획조정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5억원 증액해서 충분합니까?

○ **김영관 기획조정관**

- 기존 예산에 기초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제기관의 역할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IoT다, 5G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정보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보호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고삼석 위원님이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남북방송통신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액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저 자신도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이 5억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특히 외주제작 실태조사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4억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이나 전문인력, 취업종합서비스 구축 등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쉬운 것은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도 지난번 MIPTV에 다녀오고 저도 작년에 MIPCOM을 다녀왔습니다만 세계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방송 한류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것을 주도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기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못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2004년도 당시에 방송위원회가 MIPTV에서 Honor Country, 주빈국 행사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무려 10년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에서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것과 관련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당 있어야 할 진흥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세계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자들에게 맡겨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외시장에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포맷을 수출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것이 예산으로 확보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보면 舊 방송위원회 체제로 되어 있을 때 예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타당한데 잘 유념해서 하시고, 또 예산안을 보면 기재부에서 깎고 국회에서 살리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재부는 또 자기들 도처에서 올라온 것들 깎았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위원회 것을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아리랑 국제방송은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것을 왜 자꾸 우리에게 떠넘겨서 국회에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또 방탈기금으로 주는 식으로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나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 개정안에 관한 건 (2018-24-227)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나>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종철 행정법무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종철 행정법무담당관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 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으로는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

행령」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소관 법령상의 행정조사 중 자료제출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거나 사전통지기간이 짧아 행정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권익보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과로서는 행정조사 정비계획 작성 및 국조실 제출이 1월에 있었고, 범부처적으로 입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지난 2월 개정안이 위원회에 보고되었고, 3월부터 4월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인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제출 범위 구체화를 위한 위임규정 마련입니다. 「방송법」 제35조의5제3항의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관련 자료제출 범위 구체화를 위한 위임규정 마련입니다.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관계의 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규제하고 있는 동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어, 금지행위 조사의 경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 목적·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제출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건 구체화에 따라 동법 제15조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동법 제44조제1항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당사자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동 개정안에 대해, 첫째 개정안 제15조제4항은 자료제출 요청 요건과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가능성이 있고, 둘째 개정안 제44조제1항제4호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불수용입니다. 첫 번째,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입법목적, 본건 요건조항의 삽입 취지,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개정안 제15조제4항은 자료제출 요청 요건과 범위의 대강이 예측되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법률자문 결과였으며, 두 번째에 대한 검토의견은 예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판례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으며,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유사한 타법들의 조항에도 동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예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방송사업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기간 연장은 행정조사 기본법 제17조 조사개시 일주일 전 통지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 자료제출기간을 5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5월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부터 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붙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행정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이고,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사전통지기간을 늘려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려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방송협회가 자료제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 우려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에 관련하여 사무처에서 법률적 검토의견을 안건에 포함시켰는데 이 의견 관련해서 추가로 방송협회나 방송사업자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까?

○ 신종철 행정법무담당관

-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통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전체 법무법인 몇 군데에서 법률자문 검토를 받았습니까?

○ 신종철 행정법무담당관

- 세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세 곳 다 동일한 의견입니까?

○ 신종철 행정법무담당관

- 전부 다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법적인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우리 측 법률자문 법무법인의 검토내용 그리고 법적인 타당성·구체성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방송사와도 충분히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행정법무담당관

- 명심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온라인 활용 저해규제 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괄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온라인 활용 저해규제 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괄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철 행정법무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중철 행정법무담당관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기존 위원회 소관 각종 신청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온라인 활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대상으로는 「장애인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과 사항으로는 온라인 활용 저해규제 정비 협조요청이 국조실에서 3월에 있었고, 이에 따라 3월 말에 국조실과 협의하였으며 4월 초에 방통위 정비과제를 확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 장애인방송편성의무 경감 신청 온라인 허용 관련 사안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 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허용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신청 온라인 허용 관련 사안입니다. 후원명칭 사용 신청 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동일하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6월에 위원회 의결 및 발령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온라인 시대에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좋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이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것은 물론 민원인들의 편의도 증진시켜 주는 것이지만 종이 없는 행정, 페이퍼리스(Paperless) 행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조실에서 요청한 것 말고 자체적으로 정비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 **신종철 행정법무담당관**

-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일단 이미 기존의 법들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어 크게 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좌우지간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요청이 들어 와서 진행을 합니다만 미처 점검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 **신종철 행정법무담당관**

- 말씀대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6-1. 의결사항

다.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 동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 (2018-24-228)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붙임 1>과 같이 변경하여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중 심사위원 결격사유, 법령위반 감점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일부를 개선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심사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현행 기본계획은 「신청 법인의 구성주주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특정법인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단 1주라도 보유할 경우 구성주주사가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주주사 주식소유 관련 결격사유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위반 감점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심사항목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법령이나 심의를 위반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방송평가, 공적책임, 시정명령 횟수의 3개 평가항목에서 동시에 감점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 재허가나 종편·보도PP 재승인 등에서는 법령위반 사안이 방송평가에 반영된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감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심사항목은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의 위반 여부만 반영하여,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과 관련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방송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이 요청되나, 관련된 심사항목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개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 구성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성주주사 관련 심사위원회 결격사유 규정을 '신청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구성주주사의 주식을 심사위원이 1% 이상 소유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법령위반 감점기준과 관련해서는 다른 (재)허가 심사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방송평가와 중복하여 법령 및 심의위반을 평가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감점대상 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추구하되, 기타 법령에 대한 감점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과 관련해서는 방송심의, 법령위반 부분의 중복 감점 배점이 감소하는 만큼, 심사항목 <2>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항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심사항목 <4>번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의 세부 심사항목을 통합하고 배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5>번 '경영계획의 적정성'의 세부 심사항목으로 <5-3> '협력업체와의 상생실적 및 계획'을 신설하여 10점을 배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결 이후 도래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사전동의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안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안전은 법령위반에 대한 감점기준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또 심사 업무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과 사회적인 약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 있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기 방통위원회 첫 번째 안전으로 작년 8월 3일에 티브로드와 세종방송 등 26개사의 허가 및 재허가 사전 동의 안전을 처리했었습니다. 이때 우리 위원회가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SO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들이 포함된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받도록 하는 허가 및 재허가 사전동의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안전에서 이러한 상생협력 방안이 허가 부관사항이 아닌 사전동의 심사기본계획에서 세부 심사항목으로 배점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O 재허가나 허가 사전동의 제도는 방송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대표적인 이중규제 사례에 속하기 때문에 방송정책 업무 일원화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8-24-229)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라>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윤정 개인정보보호 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주)두산, (주)유창전자, 엔에이치엔에듀(주)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허가조건은 위치정보 법령 준수 등 아래 박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 주요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허가신청을 공고하여 접수하였고, 접수 결과 (주)두산, (주)유창전자, 엔에이치엔에듀(주) 총 3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하였고, 허가신청법인 주요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결격사유는 조회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2018년 4월 12일에 재무, 영업, 기술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여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주)두산, (주)유창전자, 엔에이치엔에듀(주) 등 총 3개 법인은 각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허가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올해 두 번째 위치정보사업허가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종전 위치정보시장의 무게 중심이 기지국 위치기반 정보사업에서 지금은 스마트폰 사업이나 사람이나 사물 위치정보 활용 사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화되면서 내부에서 혹시 경쟁관계나 중복 분야가 생기는 쪽들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중복 경쟁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인 서비스 형태가 인터넷 서비스와 모바일 기반으로 변경되면서 위치정보서비스가 거의 모든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치정보서비스가 서비스의 한 내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

라서 기존에는 허가를 받지 않던 많은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그러면 추가로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허 육 부위원장

- 심사기준에 보면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그리고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만 있는데 향후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나게 되면 그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또 위치정보 플랫폼의 중립성이나 개방성 이런 사안들도 심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허가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300여개 사업자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허가사업에 비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업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서 위치정보 규제개선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허가에 대한 진입규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합의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완화 방안을 검토할 때는 현재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준들도 향후 진입 규제 완화 방안에 맞춰서 좀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진입규제 완화에는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두산처럼 사업자 간 재무구조 편차나 기술적 편차가 굉장히 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관련된 모니터링은 충분히 진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정부의 방침이 규제를 과감하게 배제해서 새로운 사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나치게 허가 과정에서 장벽이 높거나 까다롭게 해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장을 받을 정도로 까다롭게 해서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무자격자가 함부로 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혹시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늘은 MBC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정말 휴머니즘으로 또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최승호 새 사장 부임 이후에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MBC는 이른바 적폐청산, 인적청산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마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소위 MBC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을 가동해서 취임 이후 현재까지 9명을 해고시켰고 수십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상화위원회는 과거 언론노조의 반대편에 섰던 직원들을 검찰특수부 수사팀처럼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지난 3월부터 매달 해고자를 발표해 왔습니다. 대부분 취업규칙 위반이라는 해고사유를 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나운서와 카메라기자를 해고했는데 그 사유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원들을 징계하고 해고하는 근거 역시 신중 블랙리스트에 따른 것이 아닌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해고된 아나운서는 언론노조 반대편에 선 제3노조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역시 제3노조위원장 출신이 다음 해고자라는 소문도 과다합니다. 언론 사상 전무후무한 내부 인적청산이 잇따르면서 언론노조 반대편 직원들은 해고 공포에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고가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지는 바로 MBC 새 경영진이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한 악몽일 것입니다. 최승호 사장 자신과 노조 파업을 이끈 간부들 6명이 해고를 당했고 견디기 힘든 복직투쟁을 벌여 왔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9명이 해고를 당했고 이번 주에도 또 누군가 해고를 당한다고 하니 언제 멈출지 알 수 없습니다. MBC 내부를 들여다보면 직원들은 양 진영으로 갈려 있고 지난 6년 전부터는 여러 차례 파업으로 극심한 내부 갈등 속에 살벌하게 대치해 왔습니다. 이제 인적청산은 멈춰야 하고 줄줄이 해고는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언론사에서 보도 논조를 문제 삼아서 기자나 아나운서를 스스로 해고시킨 그런 역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외 특파원 전원을 강제소환해서 본인과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적폐세력, 부역자라고 낙인 찍어서 해고를 시키고 보직은 물론 근무할 소속까지 빼앗는 대기발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검증을 해서 이념노선이 다른 직원을 색출해 내고 보수성향 직원에게는 마이크를 주지 않고 있음을 MBC 내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방송언론사가 이념의 집합체로 변질되고 반대파를 무더기로 해고하는 공포 속에 몰아넣는다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특정 정치이념을 구현하려는 정치집단과 무엇이 다른지 묻습니다.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이 특정 이념만을 전파하려고 하고 반대의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방송은 정권과 이념의 홍보수단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는 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보수성향 국민 의견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듯 이념노선에 따른 보복 인사, 인적청산이 되풀이되고 있으니 이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발 이념과 정치를 걷어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공포가 이어질지 MBC를 사랑하는 시청자와 타 언론사에서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 침해, 해고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MBC를 '경영권을 간섭한다', '인사권을 침해한다' 그런 이유로 마냥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는 MBC 감독기관인 방문진을 통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지난해 방문진 이사진과 MBC 사장 교체를 이끌어냈던 검사·감독권 행사를 이번에도 발동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제가 방금 김석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MBC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노릇이고, 또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얼마나 사실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방문진을 통해 방문진의 MBC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김석진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타당한 근거 없이 점령군 식으로 그런 것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방문진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차기회의는 5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도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5분 폐회 】